

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
제5차 교육위원회
2022.12.12.(월)

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교 육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차주식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통학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「경북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는 학교 교통안전사고의 범위를 “학교 내”로 협의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
- 통학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교통 안전대책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시함

3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명 변경: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→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
- 나.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각급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함(안 제1조)

- 다. 경상북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시행과 결과를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교통안전 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사.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아.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자. 교통안전시설 개선,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(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- 유아교육법
- 초·중등교육법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
- 도로교통법
-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의견 일부 반영(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조사팀)
- 규제심사: 규제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(교육청 교육안전과)
- 부패영향평가: 평가항목별,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

결과 ‘원안동의’ (교육청 감사관)

-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(교육청 학생생활과)
- 해당 부서 의견: 미반영(교육청 교육안전과)
- 비용추계서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 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 기간: 2022.12.5. ~ 12.10
- 의견 제출: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통학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학생 교통안전사고는 총 118건, 부상자수 123명으로 이 중 30%인 37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

구 분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 계
사고건수		14	18	22	23	41	118
	부상자수	14	20	23	25	41	123
	중상자수	4	7	7	7	12	37
	경상자수	10	13	16	15	27	81

-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경북교육청 각 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1조에서 교통 안전대책의

범위를 “학교 내” 에서 학교 밖 ‘통학로’ 로 범위 확장하여 적극적인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-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담장 안 뿐만 아니라 담장 밖의 통학로에도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, 교통사고 예방 시책 마련,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협력체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 내용

- 제명을 「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」로 개정함
- 안 제1조는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‘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내’ 에서 ‘경상북도 내 학교에서’ 로 규정함
- 안 제2조는 “통학로” 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,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 구역,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등으로 확장하여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3조는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, 시설물 개선,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협력기관을 경상북도, 경상북도경찰청, 경상북도소방본부, 교통안전공단,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로 규정함.
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에는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,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,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 학교의 교통안전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8조에는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나 이륜차의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, 바퀴 달린 놀이기구(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, 전동킥보드 등),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관련 교육을 자체 교육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생 등·하교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기관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11조에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, 교통안전교육, 교통안전지도반, 등·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교 담장 안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 밖의 일정 범

위를 ‘통학로’로 설정하였고,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 중·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로 교통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관련 부서(교육안전과) 의견 제시 결과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“통학로에서 일어난 학생 교통사고 현황”을 “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”으로 반영하였음

안 제3조(책무) 제1항 및 제11조(지원)에 관한 사항에서 “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”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제처 질의 결과 조례가 제정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첨부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
-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협력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, 교통안전교육, 교통안전지도반,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 종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